

# LIHWAP 자주 묻는 질문(FAQ)

저소득 가구 수도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Household Water Assistance Program, LIHWAP)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IHWAP 혜택은 무엇입니까?

LIHWAP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상하수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지출하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LIHWAP 혜택은 상수도 및/또는 하수도 요금이 연체된 가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에 대한 LIHWAP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원금은 가구에 상수도 및/또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수도 및/또는 하수도 업체에 직접 지불됩니다.

## LIHWAP 혜택으로 얼마를 받게 됩니까?

LIHWAP 혜택은 현재 상수도 및/또는 하수도 연체금을 기준으로 상수도 또는 하수도 서비스 제공자 하나당 최대 2,500 달러, 상하수도 서비스 통합의 경우 신청 가구 당 최대 5,000 달러입니다.

## LIHWAP 혜택을 상환해야 합니까?

아니오. LIHWAP 혜택을 받은 가구는 해당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된 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고, 신청서가 잘못 승인된 경우에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언제 LIHWA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서에 서명하여 작성을 완료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신청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통보하는 LIHWAP 자격 결정 통보(Notice of Eligibility Decision)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처리가 최대 10일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신청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경우 서비스 업체가 LIHWAP 혜택을 귀하의 상하수도 계정에 적용하기까지 최소 90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 LIHWAP 자격 결정 통지서에 제가 동의하지 않거나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LIHWAP 자격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LIHWAP 자격 결정 통지서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서명하고 작성한 신청서를 OTDA에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30일이 지났지만 자격 결정에 대해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족한 신청서는 최대 10일 동안 유예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통지서를 제공하기 전 3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거부되었거나 승인된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는 심리 요청 판결을 받은 후 60일이 있습니다. 심리 요청 방법:

### 이메일:

[NYSLIHWAP.appeals@otda.ny.gov](mailto:NYSLIHWAP.appeals@otda.ny.gov)

### 전화:

(833) 690-0208

서면 제출:  
NYS LIHWAP  
PO Box 1789  
Albany, NY 12201

가족을 돕기 위해 **LIHWAP** 외에 신청할 수 있는 기타 혜택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mybenefits.ny.gov](https://mybenefits.ny.gov)에서 다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및/또는 하수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LIHWAP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및/또는 하수도 연체금을 재산세 신청에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 사본을 신청서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요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일 연체된 모든 상수도 및/또는 하수도 요금입니다.

**LIHWAP**을 통해 수도관 파손 또는 수도꼭지 누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LIHWAP 기금은 상수도 및/또는 하수도 요금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myBenefits.ny.gov](https://mybenefits.ny.gov)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지방 사회 보장 서비스부\(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회 보장 서비스부](#)에 온라인으로 연락하거나 무료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 핫라인 1-800-342-3009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LIHWAP**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합니까?  
LIHWAP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NYS LIHWAP 콜 센터(Call Center) 1-833-690-0208번 또는 무료 OTDA 핫라인 1-800-342-300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다음 주소로 LIHWAP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NYSLIHWAP@otda.ny.gov](mailto:NYSLIHWAP@otda.ny.gov).

누가 신청서에 서명하고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까?  
신청서는 상수도, 하수도 또는 상하수도 통합 요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직접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까?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